##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8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홍문표·김용판

박 진 • 윤한홍 • 김승수

조명희 · 추경호 · 양금희

최형두 · 이 용 · 하영제

이주환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)	제11조(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)
지방자치단체, 국가의 보조를	
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	
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	
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
	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
	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
	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
	아니할 수 있다.